

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

※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교육부고시 제2021-19호(2021.7.6., 전부개정)

- 적용 규정: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공시대상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교육시간 배정	자율	10~25% 이하
출석 관리	유급휴일 출석 인정	실제 출석일 기준(휴일 제외)
*실습지원비 지급	필수	필수
실습지원 지급 기준	협의	최저임금액의 75~90% 이상 지급

*실습지원비: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

1)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(제5조)
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(사전 교육,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, 지도 등)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이하인 경우로 한다.

2) 출석 관리(제16조)

- 공휴일, 제18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실습 미 실시 일정을 확인하여,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실습이 실시된 일자로 출석관리를 한다.

3)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확립(제22조)

- 실습기관은 참여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 하며, 교육시간 비율(10~25%이하)을 고려하여 최저임금(월환산액) 기준 75~90%의 금액을 지급 한다.

4) 정부부처(재정지원) 사업의 표준화된 지원비 기준 마련(제30조)

- 정부부처 등에서의 지원비 지급 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.

1. 개 요

가. 사 업 명: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

나. 실습기간: 2021. 12. 27.(월) ~ 2022. 2. 4.(금)

- 기간 내 1개월(실제출석일 20일 이상) 실습 진행

다. 실습시간: 1주간 5일, 일 8시간(휴게시간 제외) 기준으로 운영

라. 학생 신청기간: 2021. 11. 22.(월) ~ 12. 10.(금)

마. 실습 진행 및 관리: 제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intern.jejunu.ac.kr>)

바. 참여대상

구분	내용	비고
학생	제주대학교 재학생	
실습기관	제주대학교 가족회사, 도내·외 기업체, 연구소, 기관 등	
<p>※ 실습 운영 및 실습지원금 지급 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LINC+사업단: LINC+사업 참여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- (본부)현장실습지원센터: 제주대학교 1~2학년 재학생, LINC+사업 비참여학과 재학생 <p>* LINC+사업 비참여학과 및 1~2학년의 경우 LINC+사업단 운영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</p>		

2.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

가. 운영절차



※ 실습기관에서 작성하는 학생평가서는 학생 비공개 항목이 포함되어 실습 종료 후 학과에서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.

나.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

구분	학점	실습기간	비고
전공	학과(전공)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	학과별 상이함	학과별 상이함
일반선택	현장실습1	3	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

다. 운영 일정

구 분	추진기간	주요내용
<실습기관>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	2021. 10. 18.(월) ~ 12. 10.(금) [1차] 10.18.~11.7. [2차] 11.8.~12.10.	-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intern.jejunu.ac.kr) 회원 가입 및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작성 - 신규 기업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제출 ※ 1차 신청 기업 대상 학과별 우수학생 추천 매칭 운영
<참여학생>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LINC+ 실습신청	2021. 11. 22.(월) ~ 12. 10.(금)	1. 수강신청: 하영드리미 /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※ 수강신청 기간: 2021. 11. 29. ~ 12. 24. 2. 실습기관 선택: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1)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 2) 실습기간 확인, 실습기관 선택
실습기관-참여학생 매칭	2021. 11. 29.(월) ~ 12. 15.(수)	- 실습생 선발 및 실습기관 확정 ※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함
참여학생 명단 (매칭명단) 안내	2021. 12. 20.(월) ~ 12. 24.(금)	- 참여학생 소속 학과에 안내 · 전공 일치 여부 확인
오리엔테이션	2021. 12. 6.(월) ~ 12. 24.(금)	- 참여 학생 기본소양 교육 및 행정사항 안내 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- 안전교육 및 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- 온라인 및 대면 사전 교육 실시
현장실습학기제 진행	2021. 12. 27.(월) ~ 2022. 2. 4.(금)	- 최종 협의 된 실습기간에 따라 실습 진행 - 1개월 실습 진행(실제출석일 20일 이상) - 실습 진행 시 작성 서류(http://intern.jejunu.ac.kr 등록) · 실습기관: 출석부, 학생평가서 작성 · 참여학생: 주간보고서, 최종보고서 작성
현장 방문지도	2021. 12. 27.(월) ~ 2022. 2. 4.(금)	- 현장실습생 현장지도 - 현장실습기관 애로사항 확인 - 취업 연계
만족도 조사	2022. 1. 21.(금) ~ 2. 10.(목)	-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실습 만족도조사 실시
실습종료	2022. 1. 26.(수) ~ 2. 4.(금)	- 실습지원금 지원 - 실습생 학점 취득 · 학생 제출: 출석부, 주간보고서, 최종보고서 · 학과 출력: 학생평가서 ※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절차 완료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

3. 현장실습 실습지원금 지원

가. 실습지원비 지급 내용

지급기관	지급 금액	내 용
LINC+ 사업단	455,000원 (1개월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개월(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) 단위로 실습 종료 후 지급하며, 취업 또는 상해 등으로 조기 종료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- 1개월 기준 실제 출석 가능일이 20일 미만의 경우 연장 운영하며, 연장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일할 지급함 * 일할(주 단위 실습지원비 기준): 20,900원/일 *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(월환산액 기준)의 25% 미만 지급
실습기관	1,370,000원 (1개월 기준) *교육시간 25%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- 교육시간 비율(10~25%이하)을 고려하여 <u>최저임금(월환산액 기준) 최소 75%이상으로 지급</u> -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(기간)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(63,000원/일) 계산하여 지급 - 지급방법: 학생에게 직접 지급 *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는 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의 현물 지원사항은 실습지원비로 인정되지 않음 * 실습지원비 지급일은 당월 또는 익월 중 지급하는 시점을 명시하며,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되어야 함
<p>※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중단/취소하거나 기타 재난 상황,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실습 일정 변경으로 실습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실습지원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</p> <p>※ 2021년 최저시급 8,720원 / 2021년 최저임금(월 209시간, 고시기준) 1,822,480원</p> <p>※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 단위 실습시간 수 : (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) 2. 월 단위 실습시간 수 :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 × 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.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: (1 -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)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(셋째자리 올림 값) 		

나. LINC+사업단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내용

구 분		지원내용	비 고
참여 학생	도 내	실습비 - 1개월(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) 기준 455,000원	LINC+기준
	도 외	실습비 - 1개월(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) 기준 455,000원	LINC+기준
		숙박비 - 1개월(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) 기준 300,000원 * 당일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한하여 지원	LINC+기준
		교통비 - 실습 참여학생 왕복 항공료 외 교통비 실비 지원 * 실습 시작 전, 실습 종료 후 일주일 내의 교통비 지원	150,000원 이내 지원
	상해보험가입		- 실습기간 동안 상해보험 가입
<p>※ 학생지원: 실습지원금은 1개월(실제출석일 기준 20일 이상) 단위로 실습 종료 후 지원하며, 특별한 사유로 실습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LINC+사업단에서 확인 후 일할(20,900원/일) 지원</p>			

4. 기타사항

※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교육부 고시 제2021-19호(시행 2021.7.6.)

가.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(제4조, 제6조)

- 1)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하며, 수강신청과 실습 진행의 학기가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음
- 2)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하는 경우 불인정(학교를 통하여 운영)

나. 출석관리(제16조)

- 1) 공휴일, 만근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,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실습이 실시된 일자로 출석관리를 함
- 2)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는 출석(지각 포함), 출석일자에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경우 결석, (공)휴일 및 실습기관의 휴무일 등은 휴일로 관리

다. 실습생 휴일 보장(제18조)

- 1) 실습기간 1주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이상인 경우 1일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, 유급휴일(공휴일 포함)로 함(출석관리에 포함되지 않음)

5. 현장실습학기제 유의사항

가. 참여대상별 의무사항

구분	의무사항
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생의 전공 관련 분야의 실습기관에서만 실습 진행 가능 - 실습 진행 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(사전 교육) 참여 - 매칭 후 실습학기제 지원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- 실습기업(관)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-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업(관)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- 현장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한다. - 현장실습이 완료되었을 때 실습 최종보고서와 주간보고서, 출석부 등을 실습 종료 7일 이내에 소속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실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 증명서(취득자 명부)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용노동부 고시(2018.9.11.):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(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) ① 제출 기간: 실습 시작일 이후 14일 이내 / 제출처: 이메일(roddl526@naver.com) ② 발급처: 고용·산재 토털서비스→증명원신청/발급→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신청 * 가족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특례적용범위에 들어가며 가입 가능함(가입 필수) * 1인 사업자(장)의 경우도 사업자 외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적용되므로 가입 필수 -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- 지급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, 직무수행 시간 비율(75~90%)을 곱한 금액 이상 지급 * 교육시간 25% 기준으로 운영 시 1개월 기준 1,370,000원 이상 지급 (2021년 최저시급 8,720원 기준)

구분	의무사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사항 안내 및 안전 교육, 인권 보호 - 현장실습 참여 학생 관리 및 학생 출석부 등록, 학생평가서 작성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신규 참여 기업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제출 - 실습생의 적합한 부서 배치 및 실무 교육

나. 현장실습 운영 원칙

구분	내 용
실습기관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 - 학생의 보건·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. -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·설비·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 -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, 지도가 가능해야 한다. - 운영 및 학생 지도·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.
현장실습 운영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. -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며,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한다. -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실습이 실시된 일자로 출석관리를 하며, 실습기간 1주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이상인 경우 1일이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.

6.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습 업무 조치

가. 행정 조치

- 1) 현장실습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 기업 실습 즉시 중단 및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실습생 모니터링
- 2) 실습 참여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, 즉시 실습을 중단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
- 3) 기타 세부사항은 ‘(교육부)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’ 지침에 따름

나. 학점 인정

1) 재택현장실습 진행

- 재택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, 일정한 요건* 하에서 재택현장실습 허용
- 해당학기 현장실습 기간의 1/4기간 동안은 재택현장실습 운영 가능

* (재택현장실습 인정요건)

- ① 국가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응기준이 필요할 때
- ② 실습기관은 재택현장실습 실시 전 구체적인 운영 및 학생 관리방법(재택현장실습 신청서)를 학교로 제출해야 하며, 실습생은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
- 2) 현장실습의 5분의 4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과에 학점 처리 요청
- 3) 5분의 4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 대체 교과 개설 및 교과목 변경

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이수(U)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

⇒ 수강신청 교과목 환불기간이 이후에는 학사과에 증빙을 첨부하여 공문을 통해 수강신청 취소 또는 변경 협조 요청

다. 비대면 방문점검 가능

- 1) 대학(교원, 현장실습지원센터, 전담부서 등)에서는 전염병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지도/점검을 원격으로 실시 가능함
- 2) 현장실습 방문지도/점검을 원격으로 실시할 경우 원격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증빙자료(사진 등)를 통해 실시 내역을 입증해야 함
⇒ 방문지도보고서 작성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

라. 지원금 지급

- 1)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될 경우(감염 또는 자가격리 등) 실습한 기간 동안 일할 계산 (1일 20,900원)하여 지원금 지급함

7. 문의: LINC+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64-754-3125, 4416